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298680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변론 종결2024. 8. 21.

판결 선고2024. 9.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9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4차 산업시대 브이알, 에이알, 인공지능 콘텐츠연구 개발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웹사이트개발 및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1. 21. 피고와 사이에, 제작비를 900만 원으로 하여 D 웹서비스 기획의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개발의 범위)

"갑(원고)"이 제공한 문건을 업무범위의 기본으로 삼아, "을"(피고)은 용역개발을 시행하여 작업을 완료한 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한다.

(1) 작업범위

① "갑"이 제공한 서비스 구성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기획문건(PSD), 기존 D 사이트를 1차 참고하며, 회의시 요청사항을 2차로 포함하여, 'D 재기획'에 필요한 서비스 모델링 & 정의 도출, 화면 구성안(스토리보드), ui 구성을 수행한다.

사이트 분석	기존 사이트 메뉴구조도 확인 및 작성리뉴얼 사이트 메뉴 구조도 작성	기존 IA/ 리뉴얼 IA
요구사항분석	원고로부터 기전달된 자료 취합 및 파악	-
사이트 기획	리뉴얼 메뉴구조도에 맞게 wire frame 작성	피그마 frame
관리자 기획	리뉴얼 메뉴구조도에 맞게 wire frame 작성	피그마 frame
화면 기능정의	화면 버튼 기능정의와 유효성 검사, 프레임 이동을 정의	각 frame에 주석 메모

③ "을"은 모든 산출물을 피그마에 업로드하는 형태로 "갑"에게 전달한다.

(2) 기획의 범위는 제2조 (1)-2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관리자 버전을 포함한다. - 반응형 혹은 모바일 버전도 사용가능하게 한다. 예) 메타 트랜스 기획처럼 메인 페이지만 모바일로 기획하여 반응형의 기준을 만든다.

(4) "을"이 기획한 것에 대해 "갑"은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D 기획)

"갑"이 의뢰한 'D 기획'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갑"은 'D 기획'의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 "을"에게 제공하고, "갑"의 승인에 따라 "을"은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 "갑"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2) 인도 및 검사

"을"은 제작된 'D 기획'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D 기획'을 인수 일부터 1주 이내 검수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때 검수방법은 다음 제4조에 의거 시행한다.

(3) 제작 완료 확인

"을"이 인도한 'D 기획'에 이상 없음을 "갑"이 확인하고 잔금대금 지급을 완료했을 때, 'D 기획'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조 제2항의 기간에 'D 기획'의 검수결과에 "갑"이 완료를 통보하기 어려울 경우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인도한 일주일의 지나면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납품

"을"은 제작이 완료된 'D 기획'을 "갑"에게 검수하게 한다.

제4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을"이 'D 기획'을 제작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료된 'D 기획'의 검수는 "갑"이 진행하고, "갑"은 'D 기획'의 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하자가 있거나 요구사항이 결과물과 다를 경우 보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작 기간/제작비의 지불)

(1) 'D 기획'의 제작 기간은 2022. 11. 21.(월)~2023. 2. 20.(금)까지 8주로 한다.

(2) "갑"은 "을"의 'D 기획' 제작에 따른 개발비를 다음 각 호의 지불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부가세 포함).

계약금	현금	2022. 11. 21.(킵오프)	50%	4,500,000원
잔금	현금	"갑"이 산출물 등을 검수 완료했을 시 또는 종료일(인계) 후 7일이 경과했을 경우	50%	4,500,000원

제9조(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을"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갑"의 시정요구를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2) "갑"의 협정 위반에 대한 "을"의 시정 요구를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26. 피고에게, '피고가 4주간 진행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고의 기획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았으니 2022. 12. 26.부로 업무를 멈추고 요청사항이 정리된 후 다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고, 계약기간을 3주 추가 연장하거나 남은 4주의 기간 안에 8주 동안에 해당하는 재기획을 원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피고는 2023. 1. 13.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디자인 작업을 요구하고 약정된 계약기간을 8주에서 11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요구하며 정상적인 계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직원 3명(총괄매니저, 개발자, 기획자)을 채용하였고 위 직원 3명의 2022. 11.부터 2023. 1.까지의 급여로 합계 26,698,6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기획 아이디어와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2023. 1. 13.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가 전달한 자료는 원고의 기획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지연되고 계획했던 플랫폼 오픈이 무산되었으며, 이를 위해 채용한 총괄매니저, 개발자, 기획자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5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위 직원 3명의 급여 상당액인 26,698,64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범위를 벗어나 기획이 아닌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작업물 인도에 대해 2022. 12. 26.경 업무 중지를 명하면서 디자인 관련 작업을 포함할 것과 피고의 3주간 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3주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3. 1. 12. 그래픽 작업과 기간 연장 및 리마인더 기능 추가 등을 요구하여 이에 피고가 2023. 1. 13.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는 유효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작업범위는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 구성내용을 바탕으로 하고[이 사건 계약 제2조(1)①] 피고가 기획한 것에 대해 원고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이 사건 계약 제2조(4)]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22. 11. 21. 원고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였고 한 달 후인 2022. 12. 21.까지 원고에게 작업물을 전달하여 왔던 점, 원, 피고는 2022. 12. 21.경 피고의 기획안 약 50페이지 중 3페이지를 수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3페이지를 수정해서 원고에게 전달한 점,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기획 아이디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2022. 12. 26. 자 최고서는 계약기간의 절반인 4주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피고의 작업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중지할 것과 계약기간을 3주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위 최고서에서 원고의 요청사항에는 색깔, 구성, 간격, 품형태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에 피고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고 계약서 대로 이행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제9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나라